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4.10.14(화) 10:00

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황규철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4년 10월 6일

나. 회부일자 : 2014년 10월 7일

3. 제안 이유

-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에 따라 도내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(안 제3조)
- 나. 조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 규정(안 제4조)
- 다. 장애인기업 우대 시책의 규정(안 제5조)
- 라.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(안 제6조)

5. 검토의견

- ‘충청북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안’은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에 따라 도내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은 타당함.